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99

발의연월일: 2021. 12. 2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강민정 · 김경협

김정호 · 김주영 · 김철민

민형배 · 민홍철 · 박재호

송재호 · 신영대 · 오영환

윤영덕 • 윤재갑 • 이용빈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 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

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의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(징계 사유) ① ~ ④ (생	제78조(징계 사유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
	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
	의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
	<u>하여야 한다.</u>